

제15장 법(法)

1. 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?

먼저,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"www.law.go.kr"에 가면 모든 법을 볼 수 있다.

// 법이 가지는 특징

1. 최소의 도덕
2. 상식 : 시대에 따라 변함
3. 법 표현은 추상적이다.

추상적	법의 해석은 추상적(일반적)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집행하기 위해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. 법해석학은 실정법의 해석을 목표로 하는 학문을 지칭한다.
-----	---

// 정보보호론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법

1. 개인정보 보호법
2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3. 정보통신기반 보호법
4.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보통신망법)
5. 전자서명법
6.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보보호산업법)
7.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(약칭 : 클라우드컴퓨팅법)
8.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약칭 : 신용정보법)

현재,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.(50% 이상)

1.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2022년 국가 9급]

-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여야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☞ 개인정보 보호법 -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**개인정보 처리방침**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**공개**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4.>
-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2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? [2022년 국가 7급]

-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- ②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 내용
- ③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-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☞ 개인정보 보호법 -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 -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 -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-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- 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 - 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-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 -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2. 4.>